

『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감면을 통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이용가능한 가족체험형 여가문화를 형성, 구미시민의 체력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 비율 변경(안 제11조)
-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약 80% 인하(안 별표1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상레저안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인하 및 감면율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체험센터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20% 수준으로 인하하고, 구미 시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은 20%에서 50%로,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율은 50%에서 60%로 상향 조정하며,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사용료 부담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수상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사용료 인하 및 감면율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사용료 인하와 더불어 체험장비 다양화, 시설 환경개선, 시민체험 교실 확대 운영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.